

의안 번호	2001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9. 22.(목) 홍영진 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9. 30.(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0. 14.(금)

## 2. 제안이유

- 한국자유총연맹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 및 지원 신청 등(안 제3조~제4조)
- 다. 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5조)

## 4.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